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33
----------	-------

발의연월일 : 2026. 6. 18.

발 의 자 : 황운하 · 이훈기 · 정춘생
이상식 · 신장식 · 박은정
강경숙 · 이해민 · 윤종오
정혜경 · 김재원 · 김선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일방적인 형사 고소나 정권 교체 이후 전 정권 인사에 대한 표적감사·수사 등이 빈번함에도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수사중 등 사유만으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후 제외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

최근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퇴직 후 지급 제외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퇴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2025. 6. 2. 시행되기 전에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은 지급 제외의 원인이 해소되었음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25. 6. 1. 이전에 퇴직하였으나 퇴직 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에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4조의2 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2.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⑥ 제5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퇴직 후 같은 항 각 호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밝혀져 감사기관에서 조사종료 통보를 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3.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4.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5. 5. 31. 이후부터 2025. 6. 1.까지 명예퇴직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p>⑤ (생 략)</p>	<p>3. <u>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u></p> <p>4. <u>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u></p> <p>⑦ (현행 제5항과 같음)</p>
----------------	---